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전원표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1년 3월 3일
- 회부일자 : 2021년 3월 5일

3. 제안사유

-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충청북도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안 제2조)
- 다.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규정(안 제3조)
 - 충청북도 내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법 적용 대상자로 등록된 사람
- 라. 지원 사업의 내용을 규정(안 제4조)
 - 보훈명예수당, 위문품, 진료비 및 약제비 등
- 마. 지원 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김주희)

가. 제출배경

- 본 제정안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충청북도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하기 위함임.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사항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다른 국가유공자¹⁾와 함께 규정하였으나, 1995년 광복 50주년을 계기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고, 동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는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예우의 기본 이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을 계승한 대한민국은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송고한 애국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3조(국가 등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하며 제2조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1)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제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 우리 도에는 현재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생존 애국지사 한 분과 독립유공자의 유족 이백 열 두 분이 계심.
- 타 시·도의 경우, 조례를 통해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게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바에 합당한 예우로 보훈명예수당을 포함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우리 도의 경우, 의료비와 위문품 지원만 시행하고 있음.

※ 충청북도 지원현황 (‘20년 기준)

- 독립유공자 의료비 : 1인당 年 60만원
 - 지원대상 : 300명(독립유공자 200, 배우자 100)
 - 예 산 액 : 180,000천원(도비 48,300, 시군비 131,700천원)
- 독립유공자 위문품 : 1인당 年 30만원(농협상품권) * 3.1절, 광복절 각 15만원
 - 지원대상 : 200명(독립유공자)
 - 예 산 액 : 60,000천원(도비)

- 이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2조에서는, 독립유공자” 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 정의하고, “유족 또는 가족” 은 같은 법 제5조에 규정된 범위로 정의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建國勳章)·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손자녀(孫子女). 다만,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본다.
4.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

○ 안 제3조에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규정으로, 지원대상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충청북도 내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함.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현황 ('20. 12월말 기준)

(단위 : 명)

구 분	독립유공자 수			비 고
	계	생존 애국지사	유 족	
전 국	8,351	25	8,326	
충 북	211 (2.5%)	1 (4%)	210 (2.5%)	오상근 애국지사

○ 안 제4조에서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보훈명예수당 지급, 기념일 위문품 지원,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등을 규정함.

- 기념일 위문품 지원 및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사업은 「독립유공자예우지침」 제4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한 것이며, 보훈 명예수당은 본 조례안에 따라 지급될 신규 지원 사업임.
 -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보상금, 사망일시금, 생활조정수당 등의 보훈급여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재 11개 광역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통해 별도의 보훈명예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있고,
 - 충청도 내 11개 시·군도 각각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내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적게는 8만원(단양)부터 많게는 15만원(괴산, 음성, 증평, 진천)까지 추가 지원하고 있음.
 -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와 복지증진 측면에서 볼 때, 도 차원의 보훈명예수당 지원은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다만 비용추계에 따른 제 수당금액이 생존 애국지사 월 30만원, 유족 월 10만원으로 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2만원보다 높게 책정된 점에서 다른 국가유공자들(전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4.19혁명 사망자 등)과의 형평성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안 제5조에서는, 부당한 지급, 지원대상자의 사망, 법 적용 대상자 범위에서 배제된 경우 등에는 지원 중단 또는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도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하기 위한 것으로,
- 법적, 내용적으로 타당하며 조례안예고 및 집행부 협의를 거치는 등 절차상으로도 문제없음.